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161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1. 가. D[(주민등록번호 1 생략), 군산시 E건물, F호]과 피고 B, 피고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4. 4. 1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 B, 피고 C는 각 위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18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조현락

별지